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69회 정례회
'18. 11. 29.(목)

심 사 보 고 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6
----------	----

2018. 11. 29.(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11월 8일

－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광기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1953년 조적조로 건립된 본청 대회의실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화재위험성 등 건축물 안전성이 취약하고 협소한 규모로 행사 개최 및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300석 규모의 대회의실과 부족한 소회의실 등을 건립하여 직원 및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도유림을 연차적으로 (2019~2022년간, 500ha) 확대조성 하여 도유림 재산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 등에 필요한 토지 중 매도 의사가 명확한 산지에 대하여 2019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본청 대회의실 건립》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현 대회의실)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0월.
- 건립규모 : 1,050m², 지상2층 (※ 현 대회의실 397m² 철거)
 - 1층 : 대회의실 600m² / 2층 : 소회의실 3~4개소, 부속실 등 450m²
- 사 업 비 : 3,200,000천원 (도비 100%)
 - 건축비 3,028,000천원, 용역비 162,000천원, 기타 10,000천원

《사유토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23 외 7필지
- 사업기간 : 2019. 1. ~ 12.
- 매입규모 : 2,045,152m²

(단위 : m², 천원)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공시가격	추정가격
	계	8필		2,045,152	2,300,894	3,000,000
1	청주 상당 미원 운암	산23	임	402,645	656,311	815,377
2	충주 수안보 온천	산39	“	158,678	209,454	249,924
3	“	산40	“	241,983	336,356	408,357
4	괴산 연풍 유상	산123-1	“	943,829	807,918	1,114,927
5	“	산88	“	33,322	29,990	41,237
6	“	산77-1	“	103,339	121,940	151,137
7	“	산79-1	“	150,645	129,253	203,376
8	“	산38	“	10,711	9,672	15,665

○ 사 업 비 : 3,000,000천원 (도비 100%)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첫째, 본청 대회의실 건립의 건은

- 시설 노후화로 인해 건축안정성이 취약하고 협소한 규모로 행사 개최 및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본청 대회의실을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청 대회의실은 1953년 조적조로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지붕누수, 노후된 전기시설물,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로 인해 화재위험성이 크며, 2003년 외벽 및 지붕보수, 2010년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건축물 안전 등 위험성이 높음.
- 직원조회, 교육, 강연, 국정 감사 등 다양한 행사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여 행사운영에 불편이 많음.
- 이러한 건축위험성과 행사운영의 편리성을 위하여 300석 규모의 대회의실 마련, 부족한 소회의실 확충 등 열악한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 불편해소와 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둘째,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대형화, 산림병해충 피해증가, 물 부족심화로 인한 산림자원의 중요성 증대 등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도유림 확대가 필요시 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00ha의 사유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회에는 2019년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총 8필지 2,045,152㎡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사유토지 매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도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산림부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재산의 취득

○ 본청 대회의실 건립 : 부결

○ 사유토지 매입 : 가결

□ 부결사유

○ ‘본청 대회의실 건립의 건’은 향후 장기간 사용해야 할 시설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상세한 계획으로 다시 심사해야 할 사항임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의안번호	제 76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11월 일 (제369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 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10월 31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76 호
----------	--------

제출연월일 : 2018년10월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1953년 조적조로 건립된 본청 대회의실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화재 위험성 등 건축물 안전성이 취약하고 협소한 규모로 행사 개최 및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300석 규모의 대회의실과 부족한 소회의실 등을 건립하여 직원 및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도유림을 연차적으로(2019~2022년간, 500ha) 확대조성 하여 도유림 재산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 등에 필요한 토지 중 매도 의사가 명확한 산지에 대하여 2019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본청 대회의실 건립》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현 대회의실)
- 사업기간 : 2019. 1. ~ 10.
- 건립규모 : 1,050㎡, 지상2층 (※ 현 대회의실 397㎡ 철거)
 - 1층 : 대회의실 600㎡ / 2층 : 소회의실 3~4개소, 부속실 등 450㎡
- 사 업 비 : 3,200,000천원 (도비 100%)
 - 건축비 3,028,000천원, 용역비 162,000천원, 기타 10,000천원

《사유토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23 외 7필지
- 사업기간 : 2019. 1. ~ 12.
- 매입규모 : 2,045,152m² (단위 : m², 천원)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공시가격	추정가격
	계	8필		2,045,152	2,300,894	3,000,000
1	청주 상당 미원 운암	산23	임	402,645	656,311	815,377
2	충주 수안보 온천	산39	“	158,678	209,454	249,924
3	“	산40	“	241,983	336,356	408,357
4	괴산 연풍 유상	산123-1	“	943,829	807,918	1,114,927
5	“	산88	“	33,322	29,990	41,237
6	“	산77-1	“	103,339	121,940	151,137
7	“	산79-1	“	150,645	129,253	203,376
8	“	산38	“	10,711	9,672	15,665

- 사 업 비 : 3,000,000천원 (도비 100%)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2,045,152	3,000,000				
	건물	1건	1,050	3,200,000				
	기타							
1	토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23	402,645	815,377	2019	도유림 확대조성	변명섭 외 7	매입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39	158,678	249,924	"	"	김신자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40	241,983	408,357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123-1	943,829	1,114,927	"	"	유상리 요동마을회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88	33,322	41,237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77-1	103,339	151,137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79-1	150,645	203,376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38	10,711	15,665	"	"	윤정배	"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1,050	3,200,000	2019	본청 대회의실 건립	충청북도	건립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의안번호	제 76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11월 일 (제369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 정 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10월 31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76 호
----------	--------

제출연월일 : 2018년10월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도유림을 연차적으로(2019~2022년간, 500ha) 확대조성 하여 도유림 재산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 등에 필요한 토지 중 매도 의사가 명확한 산지에 대하여 2019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사유토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23 외 7필지
- 사업기간 : 2019. 1. ~ 12.
- 매입규모 : 2,045,152m² (단위 : m², 천원)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공시가격	추정가격
	계	8필		2,045,152	2,300,894	3,000,000
1	청주 상당 미원 운암	산23	임	402,645	656,311	815,377
2	충주 수안보 온천	산39	"	158,678	209,454	249,924
3	"	산40	"	241,983	336,356	408,357
4	괴산 연풍 유상	산123-1	"	943,829	807,918	1,114,927
5	"	산88	"	33,322	29,990	41,237
6	"	산77-1	"	103,339	121,940	151,137
7	"	산79-1	"	150,645	129,253	203,376
8	"	산38	"	10,711	9,672	15,665

- 사 업 비 : 3,000,000천원 (도비 100%)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2,045,152	3,000,000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23	402,645	815,377	2019	도유림 확대조성	변명섭 외 7	매입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39	158,678	249,924	"	"	김신자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40	241,983	408,357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123-1	943,829	1,114,927	"	"	유상리 요동마을회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88	33,322	41,237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77-1	103,339	151,137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79-1	150,645	203,376	"	"	"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산38	10,711	15,665	"	"	윤정배	"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